

#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40
----------	------

2025년 3월 6일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 31. 박석 의원(찬성의원 22명)
- 나. 회부일자 : 2025. 2. 6.
- 다.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5년 3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써,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고 의회의 대응력과 생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에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2.11. ~ 2025. 2.15.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수정동의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 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제정안은 과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전문성,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발의된 것임.

### 2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현황

-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에 대한 정의가 아직 법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제작하거나 도입·운용하는 등 디지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로 정의되고 있음.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sup>1)</sup>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 중임<sup>2)</sup>.
- 국회 또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함<sup>3)</sup>.
-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인사권 독립과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성·투명성이

1) 디지털 전환 :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함.

2) 디지털 플랫폼 추진방향 발표(2022. 5.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설치(2022.7.1.),

3) 디지털포용법(2025.01.21. 공포)

요구됨에 따라 의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서울특별시의회는 선도적으로 2018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임.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정보시스템 현황>

연번	시스템명	시스템 주요 기능	도입년	운영부서 (운영팀)
1	의정플러스시스템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	2018년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
2	의정활동지원시스템	- 의원요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등 전자적으로 요구·관리	2019년	
3	입법조사회답시스템	- 입안지원, 입법정책, 법률자문등 입법조사내역 전자적으로 회답 및 자료 관리시스템	2019년	
4	의안처리시스템	- 의안등록, 의안제출, 전자연서등 의안접수 후 전자적으로 의안처리를 관리시스템	2020년	
5	전자회의시스템	-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자적으로 처리 - 전자투표, 의사일정, 안검심의 자료 등	2005년	
6	회의록시스템	- 본회의 및 상임위 전자회의록 및 영상회의록 서비스 제공 - 본회의·상임위(특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2008년	
7	본회의 영상표출시스템	- 본회의시 전광판 영상 표출관리 시스템	2008년	
8	의원메일시스템	- 시의원에게 제공되는 서울시의회 공식 웹메일 서비스	2008년	
9	화상회의시스템	- 비상 상황시 화상연결으로 본회의·상임위를 전자적 운영	2022년	
10	의장표창시스템	- 의장 표창 대상, 표창수여이력 등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2016년	의정담당관 (의정총괄팀)
11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시스템	-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1999년	언론홍보실 (영상미디어팀)
12	아카이브시스템	-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 수집·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2016년	언론홍보실 (영상미디어팀)
13	시의회전문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시스템	2019년	의사담당관 (의정자료팀)
14	의안비용추계시스템	- 각 의안발의시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추계 및 정보제공	2018년	재정분석담당관 (추계세제팀)
15	시의회 U 신문고	- 서울시의회 민원신청·처리 관리시스템	2013년	현장민원담당관 (현장민원총괄팀)

- 또한,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sup>4)</sup>한 바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종이 없는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고 있음.

### 3 조문별 검토

#### (1) 제정안 총괄 개요

- 제정안은 “디지털 의정”에 대한 정의, 디지털 의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자원 확보와 업무의 위탁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제정안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의회의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제2조(정의)	‘디지털 의정’의 용어 정의
제3조(디지털 의정 기본원칙)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의 5가지 기본원칙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전략,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기구 설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	11명 위원(의원 5명, 전문가 5명, 공무원1명), 임기2년, 1회 연임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연 2회 정기회, 임시회는 의장, 위원장 필요시 개최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시민들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관련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제10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의정을 위한 보호조치
제11조(교육)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대상의 디지털 의정 교육
제12조(자원조달 등)	디지털 의정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서울시장의 지원
제13조(업무의 위탁)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운영과 정보보호 등의 업무위탁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근거

4)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주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주관 박석의원, 2024.12.10)

## (2) ‘디지털 의정’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의정”에 대한 용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디지털 의정에 대한 법률적·사전적 정의는 없으나, ‘디지털 지방의정’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사례는 있음<sup>5)</sup>
- 따라서 해당 정의 규정은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며,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설명하여 줌으로써 조례안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임.

## (3) ‘디지털 의정’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제1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 보장(제2호), ▶디지털 의정을 통한 의정 결과의 투명한 공개(제3호), ▶디지털 의정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제4호),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 방지와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제5호)를 기본원칙으로 함.
- 기본원칙 규정은 조례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그 조례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원칙에 관한 선언적 규정임.
- 일반적으로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원칙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나,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제정되는 조례안이고, 디지털 의정의 주요 방향, 정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

---

5)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20p.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2.12.)

하며 조례 제정의 이념을 강조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4) ‘디지털 의정’의 기본계획(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의장에게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분야별 추진정책 등을 포함함.
- 디지털 의정 정책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추진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구조화되어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빠르고 폭 넓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기술 관련 환경 변화에 능동적·계획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기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5)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안 제14조)

- 안 제5조는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디지털의정 위원회’(이하 “디지털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이용, ▶디지털 의정 교육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디지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시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디지털의정위원회 개요>

구분	디지털의정위원회(제정안)
구성	11명 이내(서울특별시회의의원 5명, 전문가 5명, 담당 과장 1명)
위원장	1명(의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기능	서울특별시회의의 디지털 의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기본계획 교육 등)
회의	정기회의 연2회, 임시회 필요시

- 이 밖에 디지털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 등(안 제14조)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였음.
-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회 내 다른 위원회<sup>6)</sup> 임기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성격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요건<sup>7)</sup>에 따라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6)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홍보물편집위원회 등의 임기는 1년임.

7)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5.>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7.24.>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임.

- 그러나 해당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가 가능하고, 디지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등인 디지털 의정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디지털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시민 참여 활성화·교육 등(안 제8조<sup>㉜</sup> 안 제11조)

- 안 제8조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들의 사용 편의 등을 위해 의장이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디지털 의정 기반으로 시민들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개선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는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장의 시책추진과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민의 의정참여, 개인정보 보호대책,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임.

#### (7) 재원조달과 업무 위탁(안 제12조, 안 제13조)

- 안 제12조는 디지털 의정 추진을 위한 의장의 재원 확보와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재정·기술 지원에 대한 노력을, 안 제13조는 의정 정보시스템, 시민 참여 시스템, 디지털 의정 정보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 의정의 지속·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과 기술 등의 확보가 필수 요소이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의정 관련 시스템 구축과 교육 등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의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4 종합의견

- 제정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 참여를 위한 디지털 의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임기·운영 방식, 조례안의 시행일 등에 대한 의회 사무처의 이견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전문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1명, 찬성 11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31일

발 의 자: 박 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중화, 신복자,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22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써,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고 의회의 대응력과 생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 다.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에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1조).
- 라. 관련 자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의 전문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의정”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 의정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
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4. 디지털 의정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 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이용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고 한다) 디지털 의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5명 이내

2. 디지털 의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

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의장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원조달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9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보호
4. 제11조에 따른 교육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은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제11조(교육)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운영 및 전문가 수당 등 비용 발생
2	제8조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디지털 의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향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sup>1)</sup>
3	제9조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	디지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 도입여부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제11조(교육)	○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11조(교육)

#### 나. 전제

-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5조의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 중 3명을 공무원으로 전제
- 제11조(교육)은 매년 하는 것으로 전제
- 교육 비용은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활동수행비 자체교육 비용을 준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1) 참고자료로 2024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서를 첨부하였음(붙임1)



○ 디지털의정위원회 = 19,3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16,000천원+3,300천원

- 참석수당 = 16,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8명×2회×5년

※ 지급인원 : 위원 11명 중 공무원(당연직) 3명은 제외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3,3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1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교육 비용은 2025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활동수행비 자체 교육 비용(27,000천원)을 준용

**[붙임 1] 2024년 서울시의회 의정정보화시스템 사업설명서**

**□ 사업목적**

- 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10종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장비,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 전문 업체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마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2022. 4.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대상사업 : 전자회의시스템, 의안처리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회의록시스템, 화상회의중계시스템, 관광관영상송출시스템, 의정플러스시스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생중계자막서비스,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장비, 다기능사무기기, 비용추계시스템 등
- 추진방법 : 전문업체와 연간 유지보수계약
- 사업의 주요내용 :
  - 전문기술인력 지원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상주 또는 정기방문)
    - ※ 본회의(정례회, 임시회) 기간 상주 및 사전 점검, 신속한 운영 지원
  -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최적의 상태 유지 및 장애 사전예방
  - 장애발생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 등 신속한 장애조치
  - 의정정보시스템 지속적 보완, 기능개선 실시
  - 서버·통신장비 통합 유지보수 실시
  - 다기능사무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실시
  - 위원회 회의영상 인터넷 중계 및 영상편집 운영

**□ 추진경위**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저장장치, DB,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시의회사무처 직원 업무용 PC 소모품 지원
- 시의회 사무처 의정정보시스템 구축(11`중)

[참고] 2024년도 서울시의회 의정정보화시스템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1,080,455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분야별 예산 구성

- 사무관리비(9,460천원 : HDD, 파워 등 전산소모품 구입 등)
- 공공운영비(1,070,995천원 : 전자회의시스템, 의정플러스/의정활동지원시스템 등 유지보수 등)